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19가단5274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권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86,295원 및 그 중 20,381,821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1. 2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7. 체결한 증여계약은 20,586,29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586,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3. 12. 16.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1,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12.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7. 3. 7. 보증금액을 2,000만 원, 보증기한 2022. 2.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 A는 2018. 12. 14. 원금연체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5. 14. C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20,576,321원(= 317,691원 + 20,258,63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94,500원을 회수하여 20,381,821원이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지급하여야 할 확정손해금은 53원,

가지급금(채권보전비용)은 202,501원이며, 추가보증료는 1,92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8. 11. 2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10,842,895원 상당의 서산시 D 임야 8,952㎡ 중 200/2708 지분과 16,916,500원 상당의 경남 남해군 E 답 1471㎡가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앞서 본 C은행의 대출원리금 채무 20,312,500원을 포함하여 금융채무 107,807,500원이 존재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0,586,295원(잔존 대위변제금 20,381,821원 + 확정손해금 53원 + 채권보전비용 202,501원 + 추가보증료 1,920원)과 그 중 위 20,381,82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1. 2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 A는 2018. 12. 14.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신용보증사고발생 직전인 2018. 11. 27. 체결된 점, 그 당시 이미 피고 A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9. 5. 14.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기,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피고 A는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변론종결시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6,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6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6,200만 원 - 원고가 구하는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600만 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채권 20,586,295원 가운데 적은 금액인 20,586,2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20,586,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재은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지하층 J호 59.9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F 대 81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14분의 57.7

- 끝 -

